

서울학생인권조례안 마련을 위한 내부 집중 워크숍 속기록

- 2010년 7월 26일

○ 발제: 윤지영

주민발의형태로 학생인권조례추진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궁금증에 대해서임. 주민발의절차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보겠음. 서명은 청구한 다음 6개월 안에 완성을 해야함. 특히, 꼬투리 잡히지 않도록, 무난하게 절차에 맞게 진행되어야 함.

1번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생인권조례가 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기각할 수 있나? 법령에 위반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토해야 함. 사례있음. 현재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그것을 심사하는데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다고 판결을 내림. 그렇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함.

2번 질문,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의 자유성에 위반되는가?

헌법에 교육의 자주성 언급함. 대학이 아닌 초중등고는 교육의 자율성은 없으나 자주성에 근거함. 제 17조 교육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하고, 초중등교육기본법 8조는 법령의 한계내에서 규칙을 제정하도록 함.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생을 지도해야 함.

교육의 자주성이란 행정권력에 의해 좌지우지 하지 말아야 하는데, 공교육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의 감독을 받는 것은 벗어날 수 없음.

헌법을 보면 교사의 교육의 자율이 있는데 학생들이 받을 교육의 권리에 기초해 이루어져야 함. 수학을 위해서 교육권이 존재함. 학생들의 수학을 침해하지 않고 법령에 근거한 범위내에서 교사의 교육권이 제한당함.

관련 법령 등을 살펴보면 학생인권조례는 오히려 법령을 따르는 내용임.

질문 3, 얼마나 서명을 받아야 하나?

매번 1월초에 바뀌지만 8만여명 정도로 예상됨.

질문 4. 벌칙을 정할 수 있는가?

옛 판례있음. 현재 지방자치법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도만. 벌금은 형벌의 개념, 과태료는 행정벌의 개념임. 벌금 둘 수 없음. 조례에서 벌칙 정할 수 없고 과태료 정도만임. 이것 역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함.

질문5. 서명과정에서 조례내용을 변경할 수 있나?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제정안을 먼저 제출하고, 제정안을 첨부하여 서명받고, 나중에 서명을 제출해야 함. 사례살펴보면 서명 전 최종안이 나와있고, 자꾸 수정정도만 나와있음. 오히려 결론은 내용수정하지 않고, 초안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봄. 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하할 가능성이 높음. 우리에게 불리한 가능성이 높음.

질문6. 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수정할 수 있는가?

법상 구체적으로 정해둔 것 없으나, 의회는 내용을 고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정치적으로는 변경이 안될 수 있음. 그러나 사례를 살펴보면 변경한 것은 없음.

질문7. 옴브즈만제도를 둘 수 있는가?

지방자치단체 실제로 많이 옴브즈맨제도 둬. 법령에 반하지 않음. 법원은 합의제 행정기구로 둬. 의회에는 별도로 행정기구를 감시하는 독립기관으로 보고 있으나(우리는) 법원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봄. 그러나 행정기관으로 있으면 행정부의 검토 등을 둬. 민간인제도로 두는 것이 좋다고 봄. 그렇지 않으면 행정상 복잡한 절차를 띄기 때문임.

질문 8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가?

교육감이 하는 것이 맞음. 학생인권조례를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누구에게 청구할지 복잡할 수 있음. 교육, 학예관련 된 것은 교육감, 지방자치법에서는 교육관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아동의 복지 보호에 관련된 것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복잡할 가능성이 높음. 교육감에게 청구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 생각되나 아동전반에 담은 권리를 담은다면 서울시장에 청구해야 할 가능성이 높음. 교육감이 못받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음.

○ 질문: 두 개의 안이 겹쳐졌을 때는?

의회에 공이 넘어가는 것임. 의회가 결정해야 함.

○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거부권이 있는지? 학생인권조례의 거부권은 누가 있는 것인지?

거부권은 없음. 다만 법령에 반한다는 사전 거부가 있음. 최종적인 결재권은 아직 애매함. 조문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조례를 만들었는데, 아동과 청소년의 이익은 하나도 없었음.

- 서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의회에서도 어떻게 통과될 것인지 확인해야 함.

○ 질문: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데, 담당자는 누구인지? 옴브즈만 제도를 민간으로 두었을 때 인권침해사태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기에 서울시가 될 것이며, 학생인권조례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고민해야 함. 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법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것에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해야 하나, 실제로 두는 것은 섬세하게 고민해야 함.

민간으로 한다는 것은 권한도 독자적임. 기본적으로 행정 고발 등의 권한은 없음. 권고정도임. 이행조치도 안될 것임. 개선 권고 정도임. 공무원이 경우에도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은 대법원해석이 애매모호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권한을 가지면 안 됨.

- 국가권익위 사례, 결국 옴브즈만의 구성원 자체가 중요함. 어떤 사람이 맞느냐에 따라 달라짐.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 있음. 오히려 과태료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 경기도의 경우, 과태료를 두지 않음. 행정별로 움직이냐에 대한 한계, 또한 저항이 있는데 과태료에 대한 부담이.. 또한 옴브즈퍼슨제도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를 통해 확보하는 게 중요한 전략이었음.

○ 질문: 학칙이 조례안에 반하는 경우에는?

애매함. 소송을 두고 따진다면 구체적인 심사인데, 일반적인 조문에 어긋난다 해서 하기는 어려움. 학칙무효확인소송이 형식적으로 할 수 있으나,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건이 아님으로 할 수 없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높음. 다만, 조례를 만들기 나름임. 추가로 검토하겠음.

- 학칙외의 생활규정을 두면서 침해함.

- 재판하기는 어렵지만 학칙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가 가능해야 함.

○ 발제: 배경내

분석대상으로 삼은 것은 교육감에게 제출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자문위 안임. A안과 B안이 나왔는데 그것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임.

제일 먼저 나온 합의의 한 홍보자료로 나온 것이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어떤 학교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기본철학임. 조례안 초안이 나오기 전에 기본 철학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했음. 앞으로도 고민해봐야 함.

열가지 열쇳말.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지침서에서 나왔을 때 뽑아낸 열가지 열쇳말임. 기본철학으로 들어가게 됨.

조례안의 구성, 5가지 장과 부칙으로 구성. 2장은 학생인권내용, 3장은 구체적인 신장계획 4장 옴브즈퍼슨제도임.

부족하고 채워나가야 할 지점. 조례안의 내용이 인권침해에 쉽게 처해있는 소수학생에 대해 빠짐없이 반영하고 있는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침해상황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조례안인가, 각 조항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예컨대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권내용이 더 들어가고 있는지,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이 나누었는지 그저 노력정도만 남아있는 것인지.

세부내용 1장 총칙, 학생인권조례가 근거법률이 없다는 얘기 있으나 1조에 목표가 법적근거가 있다는 것을 밝힘. 2조 정의에서는 적용되는 학교가 어디까지인가 했을 때 유치원을 포함하여 특수학교까지.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은 비인가 대안학교, 징계대상의 학생의 학교기관은? 그때 기관에 대한 고려가 미약함. 법적검토 필요. 3조 인권보장 원칙 빠져나갈 문제들 커버하려고 노력. 4조 책무조항 조례제정자문위에서도 이견이 있음. 교장과 교감 자문위원들은 왜 학생책무는 없냐? 그래서 두루뭉실한 내용으로 책무조항을 삽입했음. 다만 자기인권 보호를 하는 것, 타인의 인권보장 등이 있음. 보호자의 책임 명시하는 것도 학부모들도 긴장함. 검토필요함.

2장 학생인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이조항을 국가인권위가 만든 차별금지법의 17개, 징계, 성적을 학교상황에 따라 추가 했음. 반영했는지 살펴봐야 함. 7조 폭력에 대한 자유, 이쪽에 체벌을 포함하고 명시했음. 따로 구분하지 않는 이유는 폭력으로 규정해야 했기 때문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체벌을 허용했는데, 조례에서 하는 것이 가능하냐? 법원은 시행령에 대해 긍정되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되고 오히려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판단기준. 그리고 상위법에 근거하여 더 풍부하게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하는 것 아니라고 주장함. 다만 쟁점은 체벌은 어디까지인가임. 체벌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쟁점나옴. 8조 학교 안전에 관련, 교총이나 전교조나 교권상담 이내용인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부각시켜야 함. 예방책임은 학교장에게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임. 현행 부당한 사례 해소한 것임. 9조 학습의 권리는 학생강제동원에 대한 내용임. 이거야 말로 교사에 대한 수업권침해인데, 동시적인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음. 모호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지 고민 10조 야자금지임. 선택권을 통해 접근하면서, 선택의 다양성의 확보를 두었음. 교육당국의 기본적 방침인데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 동의가 대다수인데, 학생의 동의에 기초에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확

인시켰음. 쟁점은 사교육, 받고 싶은 학생은? 등의 반론 등이 나왔음. 오해가 있음. 다만 이는 11조 휴식권과 함께 가야지 의미 있음. 휴식의 권리를 두었음. 학습 부담을 교육청이 조절하도록. 12조 개성실현. 두발 특히 규제해서는 안됨. 제한규정 둘째에는 정당한 사유 및 절차에 따라서 해야함. 한계조치를 두었음. 전면자유 조치는 아님. 학교규정을 통해 두었음. 13조 사생활의 자유, 갖가지 제한요건을 두었음. 쟁점은 휴대전화 소지금지 문제였음. 학교, 교사, 장소마다 각 상황이 다른데, 최근 몇몇 지자체 휴대폰금지조례 내놓았는데 소지 금지를 하는 것은 통신자유 금지하는 것이고, 최소한의 수업을 위한 제한을 둘 수 있는 제한조치를 마련하도록 두었음. CCTV 금지 해야 한다는 것도 나옴.

15조 정보의 권리. 개인의 정보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에 대한, 학생의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리를 추가했음. 학생회가 대처하기 위해서.

16조 A조와 B조로 나눔. A안 사상의 언어 사용, B안은 양심의 자유를 풀었음. 사상종교가 끼치는 영향 많은데, 사상검열하거나 소지도서 혹은 학교도서 제한, 서약서강요 두는 것에 대해 금지요구. 특히 사상은 특별한 이념을 위한 것 아니냐, 혹은 헌법에서도 만나와 있는데 조례에서 왜 삽입했나? 근데 헌재에서도 사상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반성문사용도 금지에 대한 비판 있었음. 최종안에서는 반성문의 형식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반하는 내용장요로 의견을 수정함.

17조 A안 집회자유포함 B안 내용 삭제. 여론 밀렸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17조 였음. 김상곤도 밀림. 집회에 대해 있는 A안이 진보적인가? 조례이 포함되면서 오히려 집회의 자유 재확인 되는 것인데, 오히려 수업에 제한 되는 것 아닌가? 쟁점 많은데 오히려..

18조 자치활동의 권리. 자치활동의 권한이 많이 부족해서 보완필요함. 학칙재개정에 학생참여든 것이 주목할 필요 있음.

20조 정책참여에 대한 비판 쏟아짐. 특히 학운위 발언권 등은 상위법에 언급되지 않아서 문제 될 수 있음.

21조 학교복지 살펴봄.

22조 교육환경,

23조 문화활동 의견표명권 명시했음.

25조 건강에 관한 권리에 대해 보건실 설치 학교에 책임두는 것이 맞는가? 또한 학생이 원하지 않는 치료나 정보누설에 대한 보완필요.

26조 징계 목적은 학생의 복귀를 목적으로. 또한 대리인 선임권을 학생에게 두었음. 쟁점은 그린마일리제에 대해 논쟁이 있었는데, 이게 아직 시범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모호한 내용으로 조정 되었음. 상담및 조치에 대해 이후 옴브퍼슨으로 두었음.

28조 소수자 학생 조항 하나 밖에 없음. 추가될 사안 없는지 확인.

3장, 인권교육을 핵심으로, 인권실천의 계획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 심의위원회 전문가 위원회를 둬. 교육감이 임명한 자문기구임. 심의 위원회가 매년 입안할 수 있겠음. 또한 학생참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스스로 자문기구로. 5분의 1은 소수자 대표성. 공개모집을 통한 추천절차를 둬. 권고안까지만 막강한 권한임. 학교별 평가에 학생인권기준 내용을 둬.

4장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에 식견이 있는 5인을 상임으로. 지역을 다섯 개 지역으로 나눔. 각자행동하다가 중요한 사안은 전원체로. 겸직금지 조항 두었음. 상담업무, 조사업무, 시정권고 업무, 제도개선에 대한 업무 등 국가인권위 역할이 거의 동의. 지역교육청 별로 상담실 및 옹호관 밑에 사무국을 둬. 강제조치 취할 수 없기에 과태료 부과는 두지 않았음.

이행계획 보고 하고, 사유를 소명하도록 함. 6개월 이내에 규정개정 심의위원회를 둬. 전문가와 학생대표가 들어가서 규정을 개선하도록 함.

○ 질문: 36조, 37조, 이분들은 언제 1년에 몇 번이나 모여서 하시는지?

규칙으로 두어야 함.

49조가 규칙으로 둔 상황인데, 총괄되어 있음.

- 인권위와 역할이 하고 있는데..

여러차례 진정 두었는데, 너무 오래있어서. 또한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두고 있기에, 옹호관은 학생직접, 현장먼저 방문해야 하는 것임. 교육청 해결안되는 것이 당사자 안만나는.. 권한은 겹치나

- 그래서 결국은 누가되나 아닌가?

- 학교내에 사회복지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상담인데.

- 학교폭력이나, 인권침해 역시 사회복지사를 통해 얘기인데, 얘기를 교장에게 할 수 없는 데, 옹호관이 그럴정도로 힘이 있어야 함.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의견정도 내는 것이지만 옹호관은 법이 위임한 권한이 있는..

- 학교운영위 역할과는 무엇이 다른지? 심의자문하는 역할이 있으나 실제 학교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그렇기에 위원회가 많아서 문제가 아닌지.

○ 질문: A안 17조, 헌법상 집회결사자유를 보장하는데 그것을 마치 삽입하면 부작용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을 그냥 조례에 삽입해도 괜찮지 않은가? 불이익이 없지 않은가?

그러나 교사가 우리의 집회의 대상이라면 그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은가? 현재 집회상황은 중식이나 저녁인데, 지금 수업시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한계 아닌가? 필요한 경우에 집회 허가를 두기 때문에 염려 등이 있음.

- 초안일 때 어떻게 주장했는지?

제가 취한 입장은 집회의 자유 남길 것인지 뺄 것인지에 대해 논쟁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조항 때문에 발목잡히기 때문이기에, 또한 표현의 자유에 포괄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현실적인 선택을... A안의 3항과 4항이 발목잡힐 것이라 보고 물러섰음.

○ 질문: 종교자유 관련, 중학교는 종교교육이 금지되어있는데 오히려 중학교까지도 종교교육이 허용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종교교육쪽 보완되어야 함. 휴대폰의 경우, 국가인권위의 검토안에서도 수업시간 내에 규제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학생에게 자율학습권 동의하기 어려운데, 학부모 연서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학생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학부모와 협의해야 하지 않는가? (의견)

○ 친구사이 의견:

고무적이고, 고마운 일이다. 내용을 보면 학생을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취지가 있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기본 교육내용은 이성애 중심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성정체성을 확립한 학생, 성정체성 고민하고 있는 학생에게는 큰 사회적 스트레스 강화함. 우울증이나 자살등을 유발시킴. 어떤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에서도 이성애중심주의 교육은 위협이 될 수 밖에 없음.

다원화된 사회로 가고 있는데, 다양한 정체성에 대해 분명히 학생에게 학습을 시켜야 하며, 다른 정체성을 고민하도록 노력해야 함.

많은 교사 학부모와 상의하는데 성적정체성에 대해서는 학생의 동의 없이 얘기할 경우, 학부모의 폭력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 높음. 따라서 학생들의 사적인 비밀에 대해 교사가 어떻게 정보를 취급해야 할지 고민있어야 함. 동의 밝고 밝혀야 함. 자살의 위험성이 있을 때도 학생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고지가 있어야 함.

건강권, 신체적 정신적 요소 있는데, 성소수자 학생 많은 위험이 있음. 그런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 마련되어야 함.

사회에 발생하는 많은 혐오 등의 사건 등에 대해 이런 사람과 차별에 대해 개선해야 하는데, 인권전문가 뿐만 아니라 해당소수자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구에 참여가능해야 함.

○ 장애의견:장교연

장애학생관련되어서, 학생인권조례 굉장히 관심이 크고 기대가 높음. 경북은 장애학생인권조례추진팀이 구성됨. 향후 봐야겠지만 여기를 주목하고 있음.

장애학생은 정말 취약한 지점이 있음. 생계적인 지원 안되고, 인식문제 등도 있음. 또한 학교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다양함.

특수학교 폐쇄적인데, 시설이라 표현하는데 폐쇄적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지, 자기 목소리를 어떻게 내기 어려움. 폭력에 쉽게 노출. 사례: 광주지역.

교육같은 경우에도 독특한 부분이 있음.

많은 내용 담고 있음. 얼마전 장애인교육법 통과 되었으나 법률에 포함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개별학생의 인권문제를 조례를 통해 담고 싶음.

법률, 조례 최소한의 근거인데, 기존 한계점 얘기 많이 나왔는데, 이후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요구를 할 수 있겠다 운동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는 생각함. 선언적인 내용이라도 잘 담아가야만 함. 장애인교육법 통과 된 후에도 행정심판 내고 각하되고 소송 또 냈지만, 저희가 계속 만들어 가야 할 것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높은 의미임.

방식에 대해서는 두가지 방식인데, 조례안 다 내용인데, 유기적으로 조항마다 소수자 학생들의 인권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함. 다른 의견도 있는데 특수성이 부각되지 않아 오히려 은폐될 수 있음. 집중하지 못하는 장애학생에게 관련된 내용 잘 못할 수도.. 삽입형으로 혹은 따로 장을 만들 것인지, 특성화해서 만들 것인지 고민임.

내용은 학생회 참여 구성에 장애학생이 들어가고 보장할 것인지. 비장애 학생과 함께 어떻게? 개별화 교육에 대해서도.. 학생이 자신이 교육받고 싶은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 안전문제의 경우에도, 학생간 충돌에 대해서. 학교에서 안전공제회 등을 포함할 수 있지 않을까? 차별금지 조항에서도.. 장애인권선언을 통해 확인을.. 추상적인 느낌이 있음. 임의로 학생의 욕구를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식의..과도한 보호에 대한 극복해야 함. 지체장애 학생들 보조인들에 의해 화장실 등, 불쾌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극복을 어떻게?

○ 청소년:

학생간의 관계에 대한 조항 필요. 연애편지 등에 대해서. 학업수준에 따라서 등에 대해 금지하는 것 등 이것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

○ 빈곤

- 적당히, 알맞게 오히려 애매모호한 규정이 발목을 잡힐 수 있음. 빈곤 경우, 초등학교에 급식비를 받는 문제. 예컨대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것 애매모호함.

○ 청소년

표현의 자유, 외부의 정치활동, 단체활동 제약을 좀 명시했으면 좋겠음.

- 학생의 집회자유 외부에서도 되지 못하는 것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 가해자에 대한 교육 명시되었으면 좋겠다. 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과정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가 고민.

○ 학칙재개정 참여 권리. 학생들 의견 실태보면 아닌데,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함.

- 학생총회 등의 장치를..

- 대표의 의견 수렴이 아니라 개개인의 의견 수렴까지.

○ 장차법, 입증책임의 원칙이 있는데 학생들 역시 그럴 텐데, 인권침해에 있어 입증책임 원칙이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음. 명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학생회를 원래의 목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는가? 선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 조항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운영의 민주성이 보장되어야 함. 학생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장치가 포함되어야 함.

○ 감당할만한 학습 애기, 좋다고 생각하는데.. 조례속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 기껏 얘기하는 지나친 경쟁조장에 대한 혹은 성적공개 등을.. 규정을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 교육에 대한 권리로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

- 들이 만들었습니다.

- 11조 휴식권이 그렇게 구성되었는데, 이것은 많이 부족. 하지만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 찾아봐야 함.

- 서울에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 성소수자 내용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 함께 들어와서 고민해서 들어오면 좋겠다.

○ 질문: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함께 들어간 것에 문제?

- 통칭할 수 있다고 본다.

○ 10조 노력하여야 한다 가 아닌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해야하지 않는가?

- 내용이 별 다르지 않다고 봄.

- 더 간결히 수정해야 함.

○ 조례에서 애매모호한 표현, 도움안될 수 있으나 현실적인 판단이 있음.

- 조례가 무효판결 날 가능성도 있음.

- 방과후나 이런 부분은 확실하지 않나?

- 검토과제로 남겨두고,

- 운동적, 현실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운동적으로 더 해야 할 것이라고 보임.

○ 서울시교육청 법적근거가 없다고 주장함. 규칙을 만드려면..

○ 기숙사 학교 염두에 두고 조항 보완해 보면 좋겠다. 학교 방침, 기숙사 규정도 고려.

○ 조례안 작성팀에서 내부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요청드릴 일이 있을 듯. 적극적인 도움 바람.

특히 다문화, 빈곤이 부족한 경우 큼. 지역아동센터에서 도움을 많이 주셔야 함.